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530호
----------	-------

2016. 12. 14.(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김영주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11월 22일
-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3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12월 05일

-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영주 의원)

가. 제안이유

- 하위규칙 준용 항(項) 삭제 및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용어 재정의 (안 제2조)

나.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3조)

- “수익금” ⇒ “수입금”

다. 담당 명칭을 일관성 있게 변경 (안 제5조, 제6조)

- “보건복지국장” ⇒ “식품위생 업무담당 국장”
- “식품의약품안전과장” ⇒ “식품위생 업무담당 과장”
- “위생관리담당사무관” ⇒ “식품위생 업무담당 사무관”

라. 하위규칙 준용을 규정한 항 삭제 (안 제5조 제4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6조의2)

- “해축” ⇒ “위축 해제”

###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 식중독예방 관리사업, 향토음식 관련사업 지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용자 지원 등을 위해 198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016년도 말 1,298,163천원이 조성됨.
- 본 조례안은 하위규칙 준용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조례 상 “영업자”에 대한 정의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만 제한 규정되어있어, 대상의 포괄성 및 명확성이 부재함.

- 사실상 “영업자” 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 종사하는 자 중 같은 법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재(再)규정 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과 관련해, 같은 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익금” 을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으로 수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 규정과 관련해, 행정기구 개편 시 조직 및 직급명칭의 변경에 따라 재(再)개정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보건복지국장” 을 “식품위생 업무담당국장” 으로,
  - “식품의약품 안전과장” 을 “식품위생 업무담당 과장” 으로,
  - “위생관리담당사무관” 을 “식품위생 업무담당 사무관” 으로 변경하고,
- 또한, 동 조례보다 하위법령인 규칙의 준용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는 하위법령을 준용하지 않는 바, 이를 삭제 하였음.
- 안 제6조의2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촉” 을 “위촉 해제” 로 수정하였음.

○ 본 개정안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입금

제5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식품위생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과장”을 “식품위생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생관리담당사무관”을 “식품위생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 업무담당 국장

같은 조 제5항 중 “위생관리담당사무관”을 “식품위생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해촉될”을 “위촉 해제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각각 세 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를 “도의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p> <p>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을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p> <p>2. · 3. (생략)</p> <p>4. 그 밖에 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익금</p>	<p>제3조(기금의 조성) ----- -----.</p> <p>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p> <p>2.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입금</p>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생략)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복지국장
2. 분임 기금운용관 : 식품의약품안전과장
3.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담당사무관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식품위생 업무담당 국장
2. ----- 식품위생 업무담당 과장
3. ----- 식품위생 업무담당 사무관

<삭제>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보건복지국장
- 2.·3. (생략)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식품위생 업무담당 국장
- 2.·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식품위생 업무담당 사무관-----.

<p>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u>해촉될 수 있다.</u></p>	<p>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위촉 해제될</u> --.</p>
<p>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u>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u> <u>도의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도의회</u>----- -----.</p>

## 관계법령 발취

###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2015.2.3.>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6.2.3.>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의2.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제 <2015.2.3.>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